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: 1994. 9. 27

개정(1차) : 2020. 9. 17

현대위아주식회사
산업안전보건위원회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현대위아(주)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운영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대책수립 등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·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며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·증진함에 그 목적을 둔다.

제 2 조 (위원회 업무의 우선)

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,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.

제 3 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본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1 사측대표 : 위원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, 사업주가 추천한자(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)를 말한다.

4.2 노측대표 : 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,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한자를 말한다.

4.3 간 사 :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중 노·사 양측 대표위원이 각각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

제 5 조 (운영규정의 심의)

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재개정 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6 조 (위원회의 구성)

6.1 본 위원회의 구성은 노·사 각 10인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다.

(단, 단체협약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협약에 준하여 구성한다.)

1) 사측위원 : 10명

- 대표위원 : 안전보건총괄책임자(1인)
- 위 원 : 사측 대표위원이 선임하는 9인
- 간 사 : 위원회 위원중 사측 대표위원이 선임한 인원(1인)

2) 노측위원 : 10명

- 대표위원 :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(1인)
- 위 원 : 노측 대표위원이 선임하는 9인
- 간 사 : 위원회 위원중 노측 대표위원이 선임한 인원(1인)

6.2 본 위원회의 의장은 노·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

제 7 조 (위원회의 직무)

본 위원회의 위원장, 위원,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1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, 임시 회의를 주관한다.

7.2 위원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·의결하며, 안건을 제안한다.

7.3 간사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 보고한다.

제 8 조 (위원의 변경)

산업안전보건위원의 변경 시 7일전 노·사는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 9 조 (심의 사항)

9.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9.2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9.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

9.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9.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
9.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9.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결과 확인

9.8 기타 그밖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0 조 (회의)

10.1 본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실시하되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1) 정기회의는 노사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노사 각 필요인원으로 실무회의 전환하여 시행한다.

2) 노·사 일방이 정기/임시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장소, 일시, 안건,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7일전까지 통보한다.

10.2 회사는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.

제 11 조 (심의 및 의결)

11.1 본 위원회는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.

11.2 본 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1.3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9조(심의사항)에 의거한 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.

11.4 본 위원회(실무회의 포함)에서 심의, 의결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
제 12 조 (위원회 신분보장)

12.1 회사는 회의 중 위원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부당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2.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신분을 보장한다.

제 13 조 (참고인 출석 및 신분보장)

참고인으로 위원회 출석을 요청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당 또는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4 장 의 무

제 14 조 (문서열람 및 자료제공)

노·사 양측은 안전보전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요청 시 제공 한다.

제 15 조 (공지)

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하여 전 종업원이 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회의록 작성)

16.1 위원회의 노·사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,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- 1) 개최일시 및 장소
- 2) 출석위원
- 3) 심의내용 및 의결·결정 사항
- 4) 기타 토의사항

제 17 조 (준수의 의무)

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노·사는 성실히 이행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시행일

본 위원회 운영 규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된다.